

해외 지재권 보호 및 침해대응에 관한 소고



정재관
KEA특허지원센터장

1. 서론

우리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 보편화되었고, 국제간 거래도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도 해외 진출 노력을 강화하여 국제무역의 흐름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로 인한 우리의 첨단기술이 해외에서의 인지도

향상은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수출 증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는 시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해외 지재권 보호 현황

우리기업의 해외인지도 향상은 세계 도처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우리나라 상품을 모방한 조악한 모조품은 그간 어렵게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 지재권 침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다.

●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상표법 위반	419	487,483	449	210,075	386	159,077	727	955,996
저작권법 위반	14	1,513	2	480	2	219	2	283
디자인법 위반	0	0	0	0	0	0	1	370
합 계	433	488,996	451	210,555	388	159,296	730	956,649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2006 참조

특히 이와 같은 지재권침해는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전문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보다 크게 작용한다. 외국 지재권제도가 복잡하고 소송으로 연결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이 대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차원에서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일본은 지재권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에 해외특허관을 파견하여 자국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서도 특허 전문가를 파견해 상대국의 지재권제도 및 침해 실태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 위조상품 경우 지역 및 국가 예 (건, %)

국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아시아	544 75.3%	250 34.1%	411 70.9%	144 22.5%	148 26.5%
중국	264 36.6%	129 17.6%	189 32.6%	78 12.2%	93 16.7%
대만	152 21.1%	67 9.1%	95 16.4%	49 7.6%	37 6.6%

자료: 일본 특허청, 2005년도 모방피해조사 보고서 참조

한편 미국의 경우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2004년에 '조직적불법복제단속전략(STOP·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을 수립하였다. 또한 그 일환으로 무역대표부, 특허청, 지재권 전문가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직접적 방문을 통한 단속 활동을 강화 요구 등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국의 연도별 위조품 단속건수 및 금액 예

회계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단속건수	3,244	3,586	5,793	6,500	7,255	8,022
금액(달러)	45,327,526	57,438,680	98,900,341	94,019,277	138,767,885	93,234,510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특허청의 '해외지재권보호센터'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여러 시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지재권 보호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즉 앞서 살펴본 선진국의 체계적인 움직임과 비교하여 볼 때 아직 상당수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우리 지재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성공적 해외 진출을 위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연계를 통한 다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우리 대응노력을 아직 미흡하다. 지금까지 피고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지재권 분쟁에 대응하여온 탓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 종래와는 사정이 변화하고 있다. 즉 지재권 분쟁에 있어서 우리 지재권에 대한 보호 측면 또한 고려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의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기업에 제공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해외진출기업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지재권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 수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